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안)

□ 추진배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23.6.1.)에 따라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 제공 및 수급자의 이용절차 등 안내
 -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23.6~)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 역시 시범사업 정책 대상이 됨

□ 지침내용

- (원칙) 계약의사는 대면진료 실시가 원칙이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 등이 비대면진료 신청시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가능
- (대상) 대면진료 경험자 및 예외적 허용 대상자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이내)를 받은 환자로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이상 대면진료(30일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기간) ’24.5.1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청구 시기는 관련 프로그램 전산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임

○ (방법)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화상진료*를 통해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원외처방전 발행

*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통화로 가능

- 비대면진료 후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차후 계약의사 등이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방문할 때 기록지를 전달해야 함
- 이외에도, 원외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해야 함

○ (비용) 원외처방전 발행 진찰건에 한하여 대면 진찰비용의 50% 지급

진찰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초진비용 (17,610원)	3,520원	2,110원	1,400원	면제
재진비용 (12,590원)	2,510원	1,510원	1,000원	
비대면 초진 (8,810원)	1,760원	1,050원	700원	
비대면 재진 (6,300원)	1,260원	750원	500원	

- 단, 계약의사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만 산정되며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 및 방문비용(53,000원)은 산정 불가

- 환자 1인당 월2회 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비용을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청구 횟수는 계약의사 대면 진료 시 비용 청구와 별개임

* 계약의사 방문예정일(월2회) 포함되지 않으며, 방문예정일(월2회)는 대면진료 원칙임 또한 계약의사 진찰 대상 1일 최대 50명에도 포함되지 않음

- 협약의료기관 소속 의사도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비대면 진료 가능하나 진찰비 별도 산정 없이 원외처방전 발급비용만 산정·청구 가능

* 원외처방전 발급비용: 의원 3,410원, 요양병원 4,330원, 상급종합병원 8,140원

○ (기타)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참고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관련 Q&A

Q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A1

-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Q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환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으며, **대상환자이면서 요양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이상 대면진료(30일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Q3	요양시설 입소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3	○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의 자격확인서비스 및 의무기록, 격리통지서를 통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었는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 지침은 종료가 되는 건가요?
A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 지침의 경우 '24.4.30. 종료되며, '24.5.1.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하여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진료는 계속 유지됩니다. ○ 계약의사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 등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 지침의 경우 요양시설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계약의사의 시설 방문이 곤란한 경우, 계약의사 방문예정일(월2회)에 유선 상담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대면진료는 계약의사 방문 예정일(월2회)과 별도이며 수급자 등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Q5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자는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A5	○ 기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 지침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방문 곤란 시 요양시설 입소자로 가능하였으나, '23.6.1.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u>65세 미만인 장기요양 등급자는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예외적 허용 대상자인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u> ○ 아울러,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 중 동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Q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의 진료기준은 동일한가요?
A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은 입소자 전체 대상으로 재진에 한하여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였으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과 달리 <u>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초진까지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u> -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입소자 본인확인 후 비대면진료(컴퓨터·화상통신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 음성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Q7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문자·SNS 등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나요?
A7	○ 비대면진료는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에 적합한 화상·음성통신을 통하여 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자·SNS 등으로만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 됩니다.
Q8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비대면진료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면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에서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A8	○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간호인력과 화상통신을 통해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의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평가기록지에 “비대면진료(처방전발행)”임을 기록하고, 포괄평가기록지는 요양시설 방문 시 전달하면 됩니다. ○ 요양시설은 간호일지 등에 상담내용과 “비대면진료(처방전발행)” 사항을 작성합니다.

Q9	요양시설에 간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9	○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통한 원외처방전 발급은 요양 시설 간호인력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u>간호인력이 없는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유급휴가 또는 휴무 등 포함)</u> 는 <u>비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합니다.</u>
Q10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A10	○ 비대면진료 진찰비용은 <u>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한해 계약의사 대면 진찰비용의 50%를 산정</u> 하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의사 비대면 진료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산정 가능, 계약의사 대면 진료 시 비용 청구와 별개 - 비대면진료 진찰비용은 진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시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11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11	○ <u>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진료는 기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과 동일하게 진찰비용 수가를 산정하지 않으며, 원외처방전 발급건에 한하여 원외처방전 비용만 산정 가능합니다.</u>
Q12	비대면진료 시행 당일 대면진료 시행 시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12	○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 가능합니다.
Q13	비대면진료를 전담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나요?
A13	○ 비대면진료 시범의료기관은 월별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14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서류 발급을 위한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14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서류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15	비대면진료 시행 후 의약품(비급여 포함)을 처방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A15	○ 비급여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시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하여야 합니다. * DUR이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16	비대면진료시 원내조제가 가능한가요?
A16	○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약국에 원외처방전을 전송한 후, 약국에서 조제·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 따라서 비대면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는 불가능합니다.